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기준 안내

□ 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7조)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
- 7.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병검사,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 무이탈중인 자
- 9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10. (삭제)
- 11. (삭제)
-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3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1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□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기준 및 조치(공사 채용업무시행세칙 제16조)

-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세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- 1.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(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한 경우도 포함)
 - 2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3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4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5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6. 병역, 가점, 어학능력검정시험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다.
 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세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